



( : )

[ 2019. 7. 16.] [ 29968 , 2019. 7. 9., ]

( ) 044 - 200 - 5773

1 ( ) 「 」

2 ( ) 「 」 ( " " ) 4 1  
「 」 2 1 )

1. ( ) ,

2. ( )

3. , 12

4.

3 ( 가 ) 4 3  
가 . < 2016. 8. 9., 2017. 6. 30., 2019. 7. 9.>

1. 가

2. 1

2 2. 「 」 33 1 3 가  
( 2 1 ) 가

3. 가 가  
「 」 2 9 가 ( " 가  
" ) 가

4 ( 가 ) 4 3 가  
가

. < 2019. 7. 9.>

1.

2.

3. 「 」 33 ( 「 )  
」 20 1 )

5 ( 가 ) 4 3 가 가

. < 2019. 7. 9.>

4 가 가  
가

「 20 1

6 ( ) 5 1  
5 1 1

7 ( ) 25 1 4

1. 25 1 1 3 4 ( ) 100 30  
" " ) ( )

2. 1 100 30

3. 1 2 100  
30

4. , 가

1. 100 30

2.

3. 1 2 「 」 777

4. 1 2 ( ) ,

7 2( ) 25 2 1 ( " " )  
) 3 11 1

1. 25 2 1 4 " (船齡)

2.

가 11 1

25 2 3 2  
11 1 1

25 2 3

25 2 3

1. 24 1 ( " " )가 :  
(公募) ( 24 2 1

2. 가 ) [ (裸備船) :  
100 120

[ 2018. 5. 8.]

7 3( 가 ) 25 3 1 가  
가( " 가" ) 가  
가 . 가  
가 ,

[ 2018. 5. 8.]

7 4( 가 ) 25 3 2 가 가  
7 2 6 1 가  
25 3 3 가 가

1. 24 1

2. 7 2 6 1  
[ 2018. 5. 8.]

7 5( 가 ) 25 3 5  
가 .

1. 가 가
2. 가
- 3.

[ 2018. 5. 8.]

8 ( ) 27 1  
1 .

9 ( ) 27 1

1 20

7

2

가

10 ( ) 9 1 가  
7

10

1

가

11 ( ) 30 1 ( " " )

1 ( " " ) 1 9

1. 3 [ (船主) 2 (貨主)

1 ]

2. 3

3. 가 3 .

가 3 1

1 ( " " ) 1 9

1. 가 3

2. 가 1 가

(互選)

12 ( ) . < 2018. 5. 8.>

1.

1 2.

1 3. 가 , 가

2.

3.

4.

.< 2018. 4. 30., 2018. 5. 8.>

1.

2.

3.

4.

5. 「 」 96 1 ( 24 2 4 )

6.

13 ( )

(開議)

1.

2. 12

14 ( ) 34 1 ( "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- 8.
- 9.
- 10.
- 11.
- 12.

(選任)

5 .  
3

34 1

1

34 1 " " 1 1 4 , 6 , 8

10

1 4

15 ( ) 38 2

16 ( ) 40 4  
가 ( " " 가 )  
(公賣) , 가 (價額) 가

1

7

」 9 1

- 1.
- 2.
- 3.

1 2

「 」

40 6

( 7 17 " " )

7

4

2

「 」  
17 ( ) 40 6 「 (

- " " )  
1.  
2. . .  
3.  
4.  
1  
가  
가  
2  
4

18 ( 가 ) 41 1 " " 「 」 「 」 가  
1. (水中)  
2. 「 」 2 5 . .  
3.

19 ( ) 42 1 " " 1. ,  
2.  
3.  
4.  
5. 가

20 ( ) 48 1 . ( " )  
1. 7 2 , 8 9 3  
2. 5 , 5 4 가 3  
3. 「 」 65 1 3

20 2( ) 49 2 " "

1. 가

2. 가

3. 가

[ 2018. 5. 8.]

21 ( ) 50 3 4 " "

1. .

2. 50 1 ( " )

( " " )

3. 50 5 ( " "

) .

1. 50 3

2. .

3.

4.

22 ( . ) 53 1 「 」 3 2 1 가

, 2 . < 2017. 7.

26., 2018. 5. 8.>

1. 4 가
2. 5 .
3. 6 3
- 5
4. 7 (繫船) ,
5. 8
6. 9
7. 10 1 .
8. 11 2
9. 12 2
10. 17 3 .
11. 23
12. 24
13. 26
14. 27
15. 32 ,
16. 33 .
17. 34 ,

18. 35 5

19. 37 가 ,

20. 38 3

21. 39 2 • 3

22. 40

23. 41 가 , ,

24. 42 가 가 가

25. 43 가

26. 44 (漁撈)

27. 45 2

28. 47

29. 48 1 .

30. 49

31. 52 1

32. 59 . ( 1 2 )

33. 11 3

34. 14 1 12

53 1 59 1 2 .

.< 2018. 5. 8.>

53 3 「 」 4 4

4 2 .< 2018. 5. 8., 2019. 7. 9.>

23 ( ) 59 1 2 2 .

< 26473 ,2015. 8. 3.>

1 ( ) 2015 8 4 .

2 ( ) .

3 ( ) 1

「 」 5 .

4 ( ) 「 」 13 2 1

14 1 .

1 14 2 2

5 ( ) 16

17 「 」 15 .

6 ( ) 「 」 17

20 .

7 ( ) .



155 2 " 「 」 " " 「 」 " .

155 2 1 " 「 」 " " 「 」 " .

2 1 5 .

5. 「 」 2 1 .

24 1 .

1. 「 」 .

98 1 3 .

3. 「 」 2 1 .

7 1 4 " 「 」 6 " " 「 」 5 " ,

5 " 「 」 11 " " 「 」 10 " .

30 37 .

91 1 19 22 .

91 2 1 " 6 22 " " 6 18 " .

5 .

90 1 3 .

3. 「 」 20 .

41 2 8 " 「 」 48 1 4 " " 「 」 59

2 6 13 , 20 21 " .

8 ( ) 「 」 , 「 」 , 「 」 , 「 」 , 「 」

가 「 」 , 「 」 , 「 」

」 .

< 27442 ,2016. 8. 9.>

3 .

< 28172 ,2017. 6. 30.>

---

< 28211 ,2017. 7. 26.> ( )

1 ( ) , 8

2 7

8 ( ) <315>

<316>

22 1 24 " " " "

<317> <388>

< 28846 ,2018. 4. 30.> ( )

1 ( ) 2018 5 1 . < >

2 3

4 ( )

12 2 5 " " " "

< 28877 ,2018. 5. 8.>

< 29968 ,2019. 7. 9.>

2019 7 16 .

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	500	750	1,000
나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제1항	500	750	1,000

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7. 9.>  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 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호	10	20	30
나.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호	10	20	30
다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3호	10	20	30
라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4호	30		
마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5호	30		
바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1호	50		

사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6호	15	30	50
아. 법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7호	15	30	50
자. 법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8호	25	50	100
차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9호	15	30	50
카.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0호	15	30	50
타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1호	15	30	50
파.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2호	15	30	50
하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3호	15	30	50
거. 삭제 <2018. 5. 8.>				
너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2호	120		
더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2호	50		
러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3호	100	150	200
머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4호	100	150	200
버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59조제2항제15호	50	100	200
서.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5호의2	50	100	200
어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5호	100	150	200
저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	법 제59조제2항제16호	30		

하지 않은 경우				
처.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7호	50		
커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8호	200		
터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9호	10	20	30
퍼.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 나 사이렌을 울린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0호	10	20	30
허.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1호	10	20	30
고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·진술이나 서류제출·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·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2호	50	100	200